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54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김재섭 · 이현승 · 서천호
고동진 · 김상훈 · 조은희
박상웅 · 김미애 · 엄태영
박수영 · 권영세 · 안철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희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일반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통합교육) ① ~ ③ (생략)	제21조(통합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반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u>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u>	④ ----- ----- ----- -----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⑤ <u>일반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u>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